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10 호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16호(2023. 1. 27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5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” 일부 개정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수출 목적으로 「관세법」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 구역에 반출하는 경우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수출·납품·공급·반출한”을 “수출·납품·판매·반출한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